

1	배경	3
2	자본부채 분류 BASIC	7
3	메자닌 상품 회계처리	11
4	재무보고 목적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	21

32

Q&A

1

배경

In this section	Page
전환사채는 부채인가 자본인가	4
전환사채 공시, 리픽싱 규제 강화	5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6

배경 전환사채는 부채인가 자본인가

"전환사채는 부채인가 자본인가" 스마일게이트 vs 라이노스 천억대 소송의 핵심 (2024.08.26)

"전환사채는 부채인가 자본인가" 스마일게이트 vs 라이노스 천억대 소송의 핵심

노자운 기자

입력 2024.08.26.09:00



로스트아크 모바일./스마일게이트 제공

이 기사는 2024년 8월 25일 11시 4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와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전이 막을 올렸다(☞[단독] 스마일게이트RPG, 라이노스운용에 1000억원 손배소 당해… "200억 투자했으니 상장 추진했어야"). 1000억원은 소송을 위한 일부청구 금액일 뿐, 향후 청구 취지를 확 정하면 실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스마일게이트RPG 지정감사인의 감사조서 제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작성된 구체적인 자료를 뜻한다.

원고 라이노스 측이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소송전의 핵심 쟁점과 관련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환사채(CB) 전환권을 부채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라이노스는 7년 전 스마일게이 트RPG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12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면 상장하기로 합의했는데, CB가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며 적자가 발생해 상장 요건을 미충족하게 됐다. 라이노스 측은 스마일게이트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와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전이 막을 올렸다. 1000억원은 소송을 위한 일부청구 금액일 뿐, 향후 청구 취지를 확정하면 실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원고 라이노스 측이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 소송전의 핵심 쟁점과 관련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환사채(CB) 전환권을 부채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라이노스는 7년 전 스마일게이트 RPG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12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나면 상장하기로 합의했는데, CB가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며 적자가 발생해 상장 요건을 미충족하게 됐다. 라이노스 측은 스마일게이트 RPG가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부채로 계상해 의도적으로 상장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라이노스 "CB 전환권, 자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부채로 봤나"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스마일게이트RPG) 측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전환권을 부채로 처리하는 게 적 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증거가 없다"면서 감사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원고 측이 '전환권의 부채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 사건 자체가 CB를 통한 투자에서 비롯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계약서 속 한 줄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는 중이다. 바로 '전환사채(CB) 만기 직전 사업연도 당기 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구다. CB 만기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의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이면 상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CB 발행 이후 스마일게이트RPG는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승승장구했다. 2022년 영업이익이 3641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달랐다. 흑자 120억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CB 전환권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전체 상장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마일게이트RPG와 라이노스 측 주장이 엇갈린다. 스마일게이트RPG는 CB 전환 권을 회계 원칙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라이노스 측 은 이 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의지에 따라 부채로도, 자본으로도 인식할 수 있었는 데 스 마일게이트RPG 측이 상장하지 않기 위해 '이례적으로' 부채로 계상했다는 게 라이노스 측 주장이다.

CB 전환권을 자본으로 계상해도 된다는 주장은 2011년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회제이-00094'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금감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비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2019년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코스닥 상장사코리아센터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과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게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경 전환사채 공시, 리픽싱 규제 강화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막는다... 공시, 리픽싱 규제 강화" (2024.01.23)

쿠키뉴스 > 경제증권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막는다…공시·리픽싱 규제 강화

☑ / 기사승인 : 2024-01-23 10:58:1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의 편법적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 으로 자리매김했다. 리픽싱 조건은 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전환사채→주식 간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전환사채는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기업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약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등 제도개선과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의 편법적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리픽싱 조건은 주가 변동시, 전환가액(전환사채→주식 간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또한,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안을 공시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도 이사회 결의 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앞으로는 예외사유도 주주총회 동의(건별)를 구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도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일벌백계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배경_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2022.05.04)

금융위원회 보도		자호	금융감독원
보도 일시	2022. 5. 4.(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5. 3.(화)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송병관(02-2100-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허남혁(02-2100-2695)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주요 내용

-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 (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

-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함
- □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진적용을 허용함
- * 실무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 표시 **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가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전환사채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 주식전환권 등의 상호의존성 고려 시콜옵션 별도 분리 회계처리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 □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 □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다만, 당기 초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
- *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기손익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 □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 다만,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달리 처리한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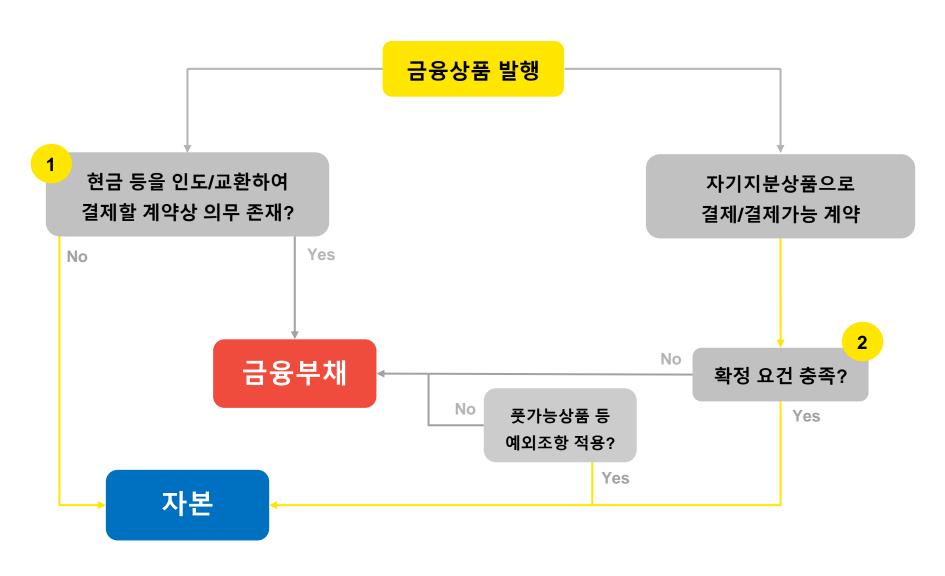
자본부채 분류 BASIC

In this section	Page
금융부채와 자본의 정의	8
Case 1) 상환우선주	9
Case 2) 확정요건(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여 결제해야 하는 계약)	10

2 자본부채 분류 BASIC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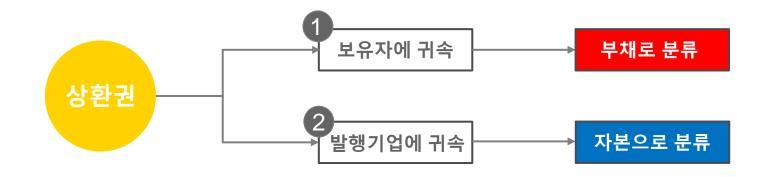
K-IFRS 1032.11, 16



배경

• 상환우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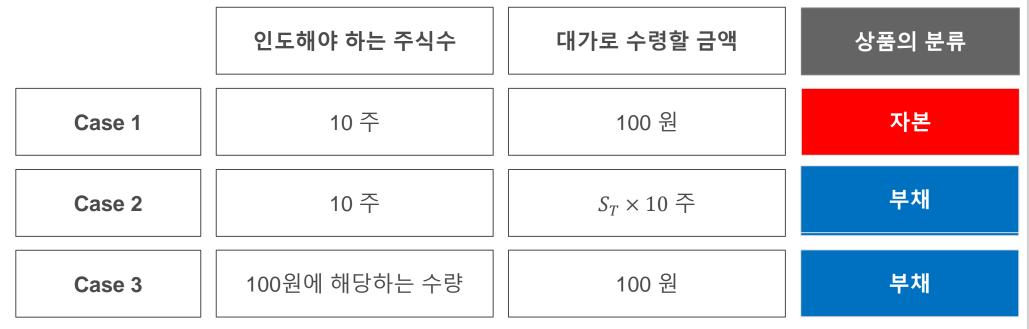
▶ 상환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



- 1 금융자산을 보유자에게 이전해야 할 <mark>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하므로 금융부채</mark>로 분류
- ②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mark>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mark>으로 분류

Case 2) 확정요건 (자신의 주식을 발행하여 결제해야 하는 계약)

• 파생계약인 경우



 S_{τ} : 금융상품의 결제시점의 발행기업 주식 가치

- ▶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Case 1의 경우에만 주가변동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경우에는 주가변동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Case 1 의 경우만 자본으로 분류됨
- ▶ 인도되어야 하는 주식의 수량과 그 대가로 수령할 금액이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동의 기준이 계약체결시점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함

3

메자닌 상품 회계처리

In this section	Page
Preview	12
Re-fixing 조건이 있는 전환권 1	13
Re-fixing 조건이 있는 전환권 2	15
조기상환권	17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 콜옵션	19
전환사채의 제3자 지정 콜옵션	20

사례

Preview

- · 전환권은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 (a) 확정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에 대하여 (b)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 결제되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가능 (Fixed-For-Fixed 요건을 만족해야 함).
 - ✓ 즉, 수량(자기지분상품)과 금액(우선주 납입액)이 동시에 확정된 경우만 자본으로 분류되고, 수량 금액 둘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부채
 - ✓ 간략한 예로, 1,000원에 납입한 우선주 1주는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이며, 이와 교환한 보통주 1주는 **확정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임.
- 따라서 전환조건이 Fixed-For-Fixed 요건(*아래 참조)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전화조건

71-11		L
사례 1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우선주 1 주당 보통주 1주의 비율로 전환됨 주식병합, 무상증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단지 희석화 방지 목적을 위해 전환비율 조정가능 	 전환수량에 대한 Re-Fixing 조항이 없음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하므로 자본으로 분류 주식병합, 무상증자 등이 발생 시 조건에 따라 전환 비율이 조정되는 조항은 실질적인 확정수량 조항에 해당하므로 확정수량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참고		
리픽싱(Re-Fixing)이란? • 특정 event의 발생 시에 자기지분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비율이나 신주인수비율(이하"전환비율")이 조정되는 것 • 전환비율에는 희석화 방지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이 있음		율이나 신주인수비율(이하"전환비율")이 조정되는 것
희석화 방지 조항이란?	• 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되는 조항이 전환금융상품의 보유자에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노출되도록 하고 다른 주주들과 비교하여 석화 방지 조항이란? 동일한 자기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조항 → 이러한 조항은 발행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되게 하지 않음	
희석화 방지 조항이 아닌 조항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전환금융상품 보유자의 손실을 보)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전환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보통주주와 다르 	

Re-Fixing 조건이 있는 전환권 1

Case 1

- C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
- ✓ 상환권 : 투자자가 보유, 만기시점(5년 후)에 행사가능(투자원금 + IRR 5%)
- ✓ 전환권 : 투자자가 보유, 발행일 이후 언제든 행사 가능
- ✔ Re-Fixing 요건 : 다음의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Re-Fixing 조건이 있음
- 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 증자하는 경우
- ② 합병, 주식교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한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C사는 전환상환 우선주를 복합금융상품("Compound instrument")으로 분류
- ✓ 상환권 : 부채인식
- ✓ 전환권 : 자본인식

C RCPS 발행 투자자 전환권, 상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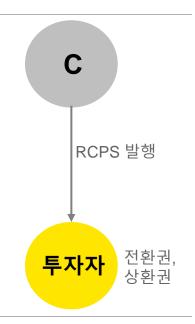
Review Point

- ✓ 전환권에 re-fixing 조건이 있는 경우, 희석화 방지 조항 외의 re-fixing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희석화 방지 조항만 포함하는 경우, 확정 요건을 위배하지 않음)

Re-Fixing 조건이 있는 전환권 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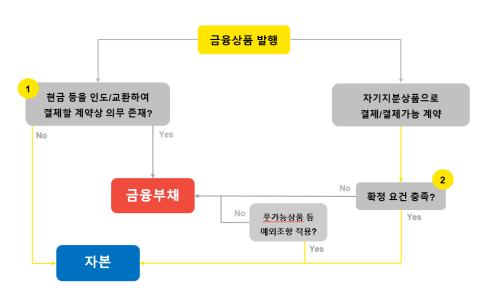
Case 1

- C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
- ✓ 상환권 : 투자자가 보유, 만기시점(5년 후)에 행사가능(투자원금 + IRR 5%)
- ✓ 전환권 : 투자자가 보유, 발행일 이후 언제든 행사 가능
- ✔ Re-Fixing 요건 : 다음의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Re-Fixing 조건이 있음
- 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 증자하는 경우
- ② 합병, 주식교환,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한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C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복합금융상품("Compound instrument")으로 분류
- ✓ 상환권 : 부채인식
- ✓ 전환권 : 자본인식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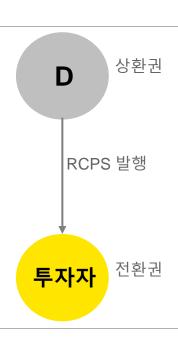
Allalysis		
현금 등으로 결제할 의무가 있는가? → "YES"	상환권 : 투자자가 상환요구 시, 현금의 지급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없음(K-IFRS 1032.19)	
확정 요건 충족 지분 상품의 결제에 해당하는가? → "YES"	전환권 : Re-Fixing 조건에 희석화 방지조항만 포함	
희석화 방지 조항 예시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전환비율 조정 무상증자한 경우 전환비율 조정 전환비율을 최초에 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을 고려하여 전환비율 조정 	
공정가치 하락	• 공정가치 하락(보통주 주가하락 등)에 따른 <u>손실을 보전</u> 하기 위한 전환비율 조정은 희석화 방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부채와 자본 요소의 배분	•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자본에 배분(K-IFRS 1032.31)	



Re-Fixing 조건이 있는 전환권 2

Case 2

- D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
- ✓ **상환권** : D사가 보유
- ✓ 전환권 : 투자자가 보유, 발행일 이후 언제든 행사 가능
- ✔ Re-Fixing 요건 : 다음의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Re-Fixing 조건이 있음
- ①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 증자하는 경우
- ②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D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 ✓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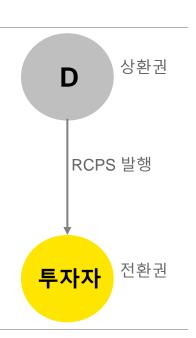
Review Point

- ✓ 전환상환 우선주가 인도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인도의 의무가 있는가?
- → 유상증자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금융상품 발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발행회사가 하기 때문에 의무가 없음

Re-Fixing 조건이 있는 전환권 2, 계속

Case 2

- D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
- ✓ 상환권 : D사가 보유
- ✓ 전환권 : 투자자가 보유, 발행일 이후 언제든 행사 가능
- ✔ Re-Fixing 요건 : 다음의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Re-Fixing 조건이 있음
- ①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 증자하는 경우
- ②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 D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 ✓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분류



A	mai	NV.	SIE
		٠,٧	

현금 등으로 결제할 의무가 있는가? → "NO"

상환권 : 발행자의 권리이므로 현금 등 결제 의무 없음

확정 요건 충족 지분 상품 결제에 해당하는가? → "YES"

전환권: 발행자가 자기지분상품 수량의 변동 가능성을 회피 가능한 Bo Fixing O 기마 존재

가능한 Re-Fixing 요건만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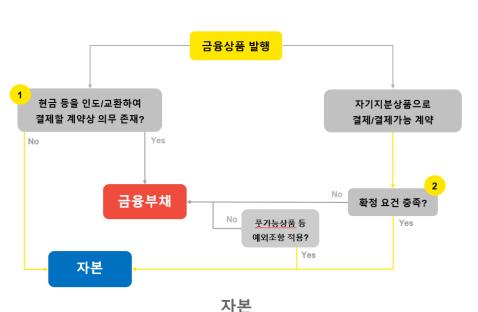
상품 구분

• 동 사례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순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파생삼품에 해당

자기지분 상품 수량

•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회사가 통제할 수 있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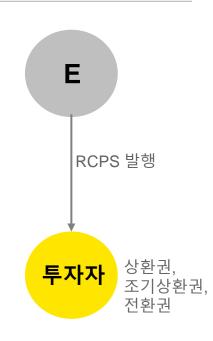
(단, 통제가능성 판단 시, 다른 계약에 따라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고려해야함)



조기상환권

Case 3

- E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
- ✓ 상환권 : 투자자 보유, 우선주 만기인 5년 후 시점에 행사 가능 (액면가 + IRR 3%)
- ✓ 조기상환권 : 투자자 보유, 발행일 이후 3년 경과 시점에 행사 가능 (상환권과 행사가격 동일)
- ✓ 전환권 : 투자자가 보유, 발행일 이후 언제든 행사 가능
- E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복합금융상품("Compound instrument")으로 분류
- ✓ 상환권 : 부채 인식
- ✓ 조기상환권 :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
- ✓ 전환권 : 자본 인식
- E사가 동일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 RCPS와의 차이점은?



Review Point

K-IFRS 1109, B4.3.5

- ✓ 금융부채에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조기상환권, 전환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사품은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여 파생상품 회계처리 수행

조기상환권, 계속

Case 3

- E사가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가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
- ✓ 상환권 : 투자자 보유, 우선주 만기인 5년 후 시점에 행사 가능 (액면가 + IRR 3%)
- ✓ 조기상환권 : 투자자 보유, 발행일 이후 3년 경과 시점에 행사 가능 (상환권과 행사가격 동일)
- ✓ 전환권 : 투자자가 보유, 발행일 이후 언제든 행사 가능
- E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복합금융상품("Compound instrument")으로 분류
- ✓ 상환권 : 부채 인식
- ✓ 조기상환권 :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
- ✓ 전환권 : 자본 인식

E RCPS 발행 상환권. 투자자 조기상환권. 전화권

있는가? → "YES"

현금 등으로 결제할 의무가 상환권, 조기상환권: 투자자가 상환 요구 시, 현금의 지급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없음

확정 요건 충족 지분 상품 결제에 해당하는가? → "YES"

전환권: 확정 요건 충족

상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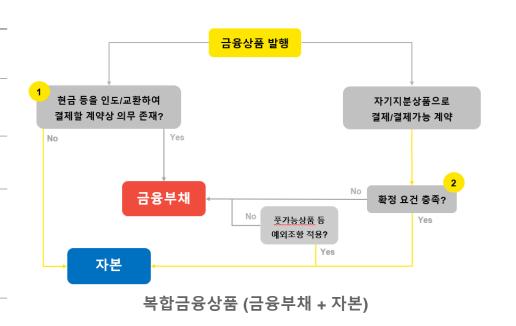
• 상환권과 조기상환권은 금융부채, 전환권은 자본요소에 해당

분리 여부의 결정

• 조기상환권은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주계약인 상환우선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K-IFRS 1109. B4.3.5 적용)

(단, 본 사례에서는 조기상환권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분리하지 않음)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 콜옵션

Case 4

■ **발행금액:** 1,000 (액면가액)

■ 만기: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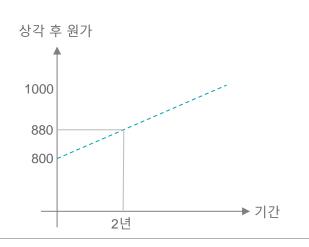
■ 이자율: 0%

■ **발행자 콜옵션 :** 발행일 이후 2년 뒤부터 행사가능 (행사가격 : 1,000)

■ 전환권: 발행일 이후 투자자 권리로 언제든 행사가능

■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 주계약 820, 전환권 200, Call -20

■ 2년 후 주계약의 상각 후 원가: 880



Review Point

A.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부채요소에서 분리할 내재파생상품 없음

- → 자본요소(전환권)를 분리하기 전에 콜옵션의 분리 여부를 판단
- → 전환권 분리 전 주계약의 상각 후 원가는 항상 1,000이므로, 콜옵션 행사가액(1,000)과 동일

B.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전환권과 발행자 콜옵션은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같이 분리

- → 복합내재파생상품 기준으로 분리 여부를 판단
- → 하나라도 분리해야 하는 요소가 있으면 복합내재파생상품 전체를 분리함

전환사채의 제3자 지정 콜옵션

Case 5

■ **발행금액:** 1,000 (액면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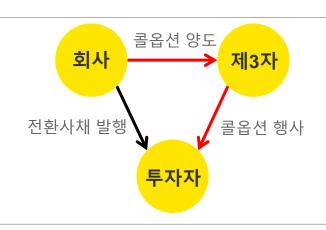
■ 만기:5년

■ **이자율**: 0%

■ **콜옵션 :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가 행사 가능** (행사가격 : 1,000)

- 발행자가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여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

■ **전환권** : 발행일 이후 투자자 권리로 언제든 행사가능



Review Point

K-IFRS 1109, 4,3,1

- ✓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K-IFRS 1109 4.3.1)
- → 전환사채는 주계약 사채와 전환권(파생상품 부채) 인식
- → 콜옵션은 파생상품 자산 인식
- → 즉, 파생상품 부채와 파생상품 자산이 각각 인식 됨

K-IFRS 1109 4.3.1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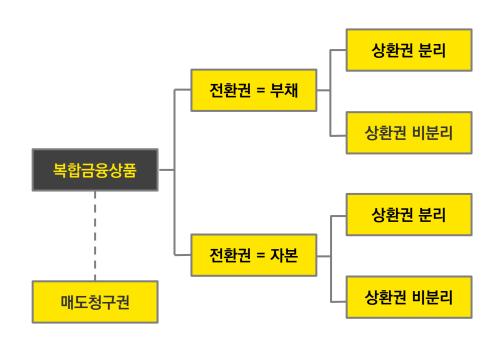
재무보고 목적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

In this section	Page
재무보고 목적 공정가치 평가	22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23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25
제3자 지정 매도청구권 공정가치 평가방법	27
Stock Option 공정가치 평가방법	29
감사법인의 주요 요청자료 List	30

재무보고 목적 공정가치 평가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 ✓ K-IFRS 1032호 "금융상품: 표시"
- ✓ K-IFRS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 K-IFRS 1109호 "금융상품: 공시"
- ✓ K-IFRS 1113호 "공정가치 측정"



Fixed-for-Fixed Requirement (K-IFRS 1032)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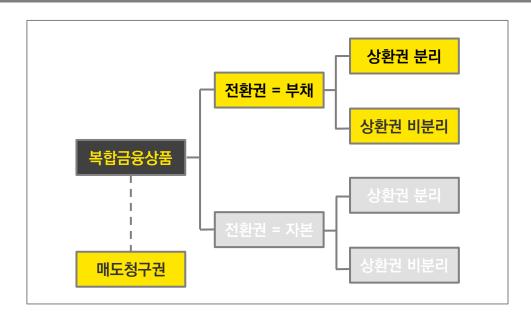
② 별도의 금융상품 (K-IFRS 1109 B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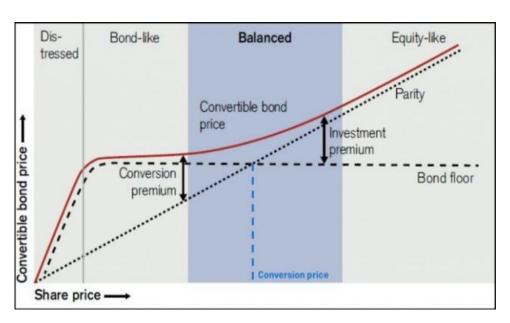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

③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K-IFRS 1109 B4.3.4)

복합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이 서로 다른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으며, 각각 쉽게 분리할 수 있고 서로 독립적인 경우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복합금융상품 평가방법론(TF모형)

- ▶ 평가대상인 복합금융상품의 전환권은 만기일 도래 이전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지분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며, 투자자 조기상환권은 전체 금융상품의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일 도래 이전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조기에 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임
- ► 재무제표에 부채가치를 측정하여 인식해야 하므로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되었을 경우, 전환권 부채와 상환권 부채를 모두 측정해야 함
- ▶ 따라서 전환권 옵션과 상환권 옵션의 권리를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의 가치를 Tsiveriotis-Fernandes 모형(이하 "TF모형")으로 평가함. 일반적으로 CRR 모형으로 기초자산을 전개한 후, 복합금융상품을 평가함
- ▶ TF모형은 복합금융상품의 가치를 무위험자산인 지분가치와 위험자산인 부채가 치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임. 위험중립가정 하에 지분가치는 무위험이자 율로 할인되며, 부채가치는 상환의무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위험할인율로 할인하여 두 가치의 합산으로 복합금융상품의 가치가 결정됨
- ▶ TF모형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기초자산은 정규분포를 따름
 - 계약 참여자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합리적 시장참여자임
 - 세금이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음
- ▶ 복합금융상품은 내재된 여러 옵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산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내재옵션들이 행사됨. 행사가 예상되는 옵션의 특성에 부합한 신용위 험을 옵션마다 다른 할인율로 반영하여 복합금융상품을 평가함.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계속

TF모형 평가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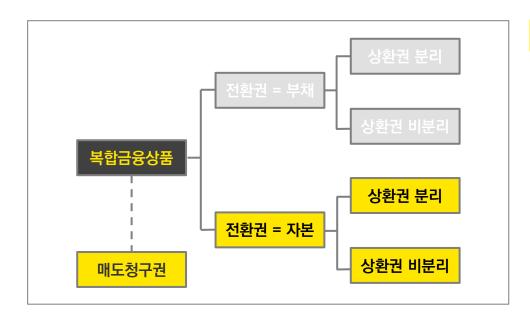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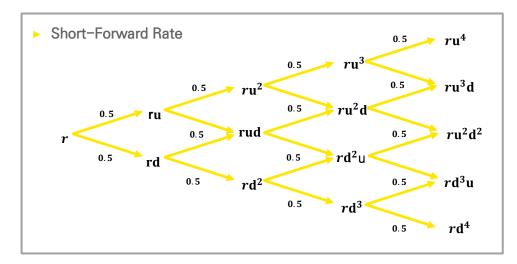
 $\begin{aligned} & Payoff \\ &= \begin{cases} & Max[Min(HV, Call_K), Convert_K, Put_K], \\ & Min[Call_K, Max(Convert_K, Put_K, HV)], \end{cases} \end{aligned}$

전환권/교환권이 Call상환권에 우선하는 경우, Call상환권이 전환권에 우선하는 경우.

$$\begin{split} &HV_{i,j} \\ &= \frac{Ve_{i+1,j}*p + Ve_{i+1,j+1}*(1-p)}{1 + rf_{fwds}*dt} + \frac{Vb_{i+1,j}*p + V_{i+1,j+1}*(1-p)}{1 + rj_{fwds}*dt} \\ &+ Coupon_{flow} \end{split}$$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복합금융상품 평가방법론(BDT 모형)

- ▶ 평가대상인 복합금융상품의 전환권은 만기일 도래 이전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지분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며, 투자자 조기상환권은 전체 금융상 품의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일 도래 이전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으로 조기에 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임
- ► 재무제표에 부채가치를 측정하여 인식해야 하므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전환권이 제외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보고 상환권 부채를 측정해야 함
- ▶ 따라서 상환권 옵션의 권리를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의 가치를 Black-Derman-Toy 모형(이하 "BDT 모형")으로 평가함. 일반적으로 상환권 옵션의 경우 금리의 영향을 받는 구조이므로 이를 고려함.
- ▶ BDT모형은 현재 시장에서 관측되는 이자율 곡선과 차익거래기회가 발생하지 않는 단기현물이자율(Short Rate)이 상태변수인 1요인모형(One Factor Model)로, 시장금리 변동에 대응하여 보유 또는 상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활용됨
- ▶ BDT모형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채권수익률 간에 완전한 상관관계가 존재
 - 모든 자산의 1기간 기대수익률은 동일
 - 단기이자율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름
 - 금리의 상승 및 하락은 매 구간 독립적 확률을 가짐
 - 이자율이 장기평균 회귀성향을 보이는 변동성의 기간구조를 고려
 - 세금이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음
- ▶ BDT모형은 현재 시장에서 관측되는 이자율 곡선과 차익거래기회가 발생하지 않는 단기현물이자율(Short Rate)이 상태변수인 1요인모형(One Factor Model)로, 시장금리 변동에 대응하여 보유 또는 상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데 활용됨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의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계속

BDT 모형 평가 Process

100

1. 무이표할인채권의 기간별 현재가치 계산

 관찰 된 시장이자율로부터 최초 구간에 대한 무이표할인채권의 현재가치와 단기선도이자율을 산출함

Zero Coupon Bond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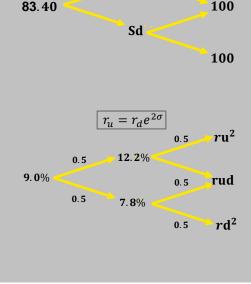
Short-Forward Rate



2. Calib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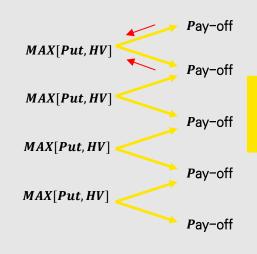
 ▶ 금리 변동성과 이자율 분포 가정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다음 구간에서 무차익을 만족하는 변동성 기간구조 및 단기선도이자율 경로를 도출함. 이후 구간마다 계산을 반복하여 만기시점까지의 단기선도이자율 트리를 전개함

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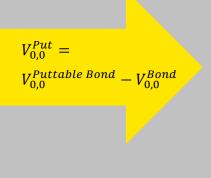
3. 만기 Pay-off로부터 후방대입

▶ 계약조건에 따른 만기일 원리금 상환 현금흐름을 2.에서 전개 된 구간별 단기선도이자율로 할인함. 후방대입하며 상환가치와 보유가치 중 더 큰 현금흐름이 결정되도록 함



4. 풋옵션의 가격 결정

3.을 반복하여 현재시점까지 할인한 조기상환권부사채의 가치에서 주계약가치를 차감하여 상환권의 가치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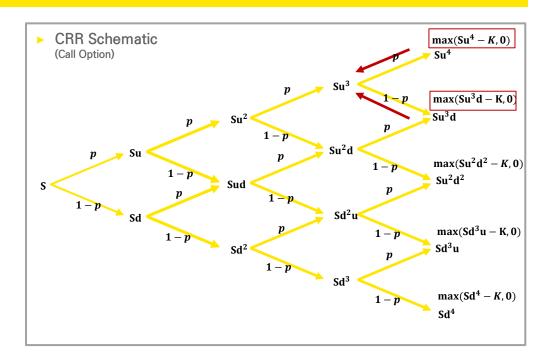


*이자율이 로그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sigma=\frac{1}{2\sqrt{\Delta t}}\Big[\log\Big(\frac{r_u}{rd}\Big)\Big], \ \sigma^2=\frac{1}{2}\Big[\log\Big(\frac{r_u}{rd}\Big)\Big]$

제3자 지정 매도청구권 공정가치 평가방법

제3자 지정 매도청구권(콜옵션) 평가방법론 (옵션차익 혼합할인법)

- ▶ 발행자 매도청구권(이하 "제3자 지정 콜옵션" 또는 "콜옵션")은 일반적으로 체결된 주주간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대상회사 또는 대상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임
- ▶ 제3자 지정 콜옵션의 기초자산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이며, 복합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준에 따라 행사가 예상 되는 옵션마다 다른 신용위험을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제3자 지정 콜옵 션은 아래와 같이 기초자산인 복합금융상품의 신용위험과 같은 신용위험 을 내재하게 됨
 - 전화권: 무위험
 - 투자자 조기상환청구권 및 사채 만기상환권: 발행자의 신용위험
 - 복합금융상품 보유결정: 무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이 혼재
- ▶ 제3자 지정 콜옵션은 무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이 혼재된 신용위험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옵션차익 혼합할인법을 사용함
- ▶ 옵션차익 혼합할인법은 제3자 지정 콜옵션 가치를 무위험자산인 지분가 치와 위험자산인 부채가치로 각각 분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임. 위험중립가 정 하에 지분가치는 무위험이자율로 할인되며, 부채가치는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내재된 위험할인율로 할인함. 결과적으로 두 가치의 합산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가치가 결정됨



▶ 제3자 지정 콜옵션의 Payoff는 다음과 같음:

$$Payoff^{Call} = Max[V^{CB} - Call_K, 0]$$

 $Payoff^{Call}$: 콜옵션의 이득 / V^{CB} : 전환사채의 가치 / $Call_K$: 제3자 지정 콜옵션의 행사가격

제3자 지정 매도청구권 공정가치 평가방법, 계속

제3자 지정 콜옵션 옵션차익 혼합할인법 평가 Process

1. 기초자산 전개

- ▶ 제3자 지정 콜옵션을 평가하기 위해 TF모형을 이용하여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복합금융상품 가치를 이항과정으로 전개하여
 Ve^{CB}, Vb^{CB}, HV^{CB}, V^{CB} 값을 노드마다 생성
 - Ve^{CB} : 전환사채의 지분가치
 - Vb^{CB} : 전환사채의 부채가치
 - HV^{CB} : 전환사채의 보유가치
 - V^{CB} : 전화사채 가치

Ve^{CB} Vb^{CB} HV^{CB} V^{CB}

2. 콜옵션 신용위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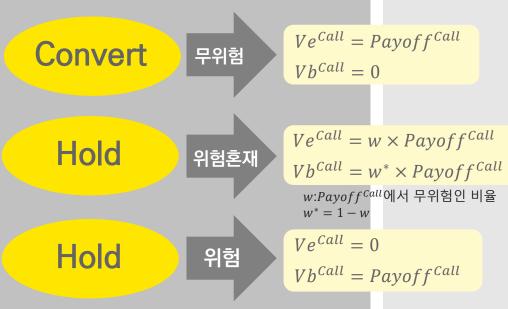
- 콜옵션 보유자는 콜옵션을 행사 할 때, 복합금융상품의 내재옵션(전환 / 조기상환 / 만기상환)의 선택 또는 보유결정시 기대되는 가치를 행사금액과 비교하여 행사여부를 결정함
- ▶ 콜옵션 보유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복합금융상품의 상태에 따른 신용위험에 의존하여 콜옵션의 신용위험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 전환(Convert): 무위험
- 조기상환(Put), 만기상환(Bond): 발행자 신용위험
- 보유(Hold): 무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의 혼재상태

3. 콜옵션가치 분배 및 가격산정

▶ 옵션차익 혼합할인법을 사용하여 콜옵션의 이득($Payoff^{Call}$)을 지분가치(Ve^{Call})와 부채가치(Vb^{Call})로 분배하여 노드마다 다른 콜옵션의 신용위험을 반영함

$$Payoff^{Call} = Max[V^{CB} - Call_K, 0]$$

▶ Backwardation과정을 통하여 콜옵션의 현재가치(VCCAL)를 산출



 $V_{0,0}^{Call} = Ve_{0,0}^{Call} + Vb_{0,0}^{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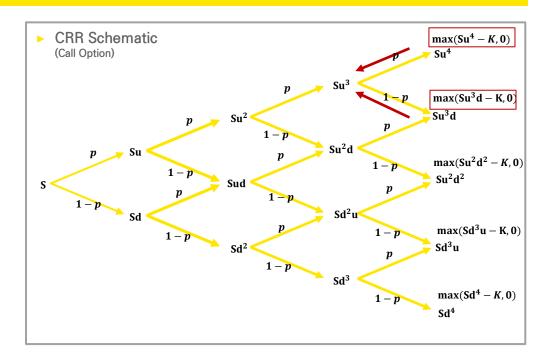
스톡옵션 평가방법론(이항모형)

- ►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 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행사 기간 동안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 스톡옵션 보유자는 기초자산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일반적인 스톡옵션은 일정기간 동안 행 사할 수 있는 아메리칸 옵션(American Type Option)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RR 이항모형(CRR Binomial Tree Model)을 평가에 사용함.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음

: 주가(S), 행사가격(K), 변동성(σ), 만기(T), 시간간격(dt), 무위험이자율(rf)

- ▶ 스톡옵션은 무위험자산인 주식, 즉 무위험자산인 지분가치로 교환되므로 무위 험이자율로 할인함
- ▶ 특히 스톡옵션은 일반 콜옵션과는 다르게 임직원 개인과 기업간 체결되는 계약임에 따라 조기에 행사되는 경향이 있음. (양도 불가능한 조건, 퇴사 시 취소등) 따라서 이런 스톡옵션만의 조기행사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톡옵션의 가치를 추정해야 함
- ▶ 조기행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항모형의 만기 T를 계약서 상 계약만기가 아닌 기대만기로 고려함(K-IFRS 1102 B16 ~ B21)
- ▶ 기대만기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 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중평균하거나, 과거 자료를 통해서 추정치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음
- ▶ 간편법으로 가득기간의 길이의 절반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음

기대만기 = (가득기간 시작일 + 행사 종료일) / 2



▶ 스톡옵션의 Payoff는 다음과 같음 :

 $Payoff^{SO} = Max[S^t - K, HV^{t+1}]$ $Payoff^{SO}: 스톡옵션의 이득$ $S^t: t \text{시점 주식의 가치}$ K: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HV^{t+1}: t+1 \text{시점의 스톡옵션의 할인 가치}$

감사법인 주요 요청자료 List

▶ 공통 자료

No.	구분	요청 자료
1	기초 자료	검토대상 파생상품의 평가기준일 공정가치평가보고서
2	기초 자료	검토대상 파생금융계약 및 약정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기초자산의 기대변동성 산출 내역	기초자산의 변동성 산출시 사용한 Raw Data(주가 정보 등)와 변동성 산출내역
4	신용등급 조회화면	위험이자율의 대용치로서 회사와 동일한 신용등급인 회사채 만기수익율 정보를 활용한 경우, 회사 신용등급의 조회화면
5	ΥΤΜ	무위험 및 위험수익율의 대용치로 사용한 국공채 및 회사채, 스왑금리 등의 YTM Data
6	이자율 기간구조	YTM Curve Data로부터 보간법 및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추출한 구간별 Spot, Forward Rate

감사법인 주요 요청자료 List, 계속

▶ 모형 별

No.		평가 모형	
1	BS (Black-Scholes)		
	1	Input 변수 및 결과값 일체	
2	CRR	(Cox-Ross-Rubinstein)	
	1	기초자산(Stock Value) Tree	
	2	행사가치(Pay-off) Tree	
3	TF (T	siveriotis-Fernandes)	
	1	기초자산(Stock Value) Tree	
	2	지분가치(Equity Value) Tree	
	3	채권가치(Bond Value) Tree	
	4	보유가치(Holding Value) Tree	
	5	전환가치(Convertible Value) Tree	
	6	의사결정계수(Q-Parameter) Tree	
	7	그 외 Re-fixing 및 희석화 반영 전환가격 조정 Tree	
	8	이항 모형 패키지에서 전환권, 콜옵션, 풋옵션이 모두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산정되는 금액이 일반 사채 평가 모형에서	
	_	산정한 주계약 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결과	
4	GS (Goldman-Sachs)	
	1	기초자산(주가) Tree	
	2	복합가치(Pay-off) Tree	
	3	전환확률 Tree	
	4	가중평균 할인율 Tree	
	5	그 외 Re-fixing 및 희석화 반영 전환가격 조정 Tree	
	6	이항 모형 패키지에서 전환권, 콜옵션, 풋옵션이 모두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산정되는 금액이 일반 사채 평가 모형에서	
	·	산정한 주계약 금액과 일치하는지 검증 결과	
5		(Black-Derman-Toy)	
	1	주계약가치 평가모형	
	2	조정-선도이자율(Calibrated Forward) Tree	
	3	상환가치(Pay-off) Tree	
6	MC (Monte-Carlo)	
	1	각 투입 변수의 확률분포 가정(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삼각분포, 이항분포 등)	
	2	투입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 모수값	
	3	투입 변수의 표본 Data Table	
	4	투입 변수간 상관행렬과 유의성 검정값(p-value, t-test 등)	
	5	표본 변수의 분포적합도 검정값(Anderson-Darling Test, Kolmogorov-Smirnov Test, Chi-Squared Test 등)	

5 Q&A

In this section	Page
사전 질의내용 답변	33
SWOT	37

사전 질의내용 답변

▶ 회계법인의 외화채권 공정가치레벨 분류 기준

A사	B사	C사	D사
채권의 호가와 거래가가 존재하는 경우 level 1, 대상채권의 호가가 존재하진 않지만 동일 발행사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level 2, 구조화 상품이면서 평가 시 비관측변수(예를 들면, 금리 간 상관계수)가 투입변수로 사용되는 경우 level 3	동일	동일	동일

▶ (발행일/발행자 평가) 제3자 콜옵션이 있는 메자닌 상품의 가격 관련 사항

금융감독원의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 이후, 제3자지정 콜옵션의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발행일의 발행가를 거래 가로 존중하여 10,000원 당 10,000원의 가치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회계법인에서는 이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인 제3자 콜옵션의 가치가 2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A사	B사	C사	D사
별도파생상품이나 제3자 콜옵션까지 포함하여 복합금융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발행일에 거래되는 10,000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함. 다만 이는 회계처리되는 공정가치의 개념이며, 실제 평가 시의 가치는 10,000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Day 1 P/L 발생함. (** Day1 P/L의 요소 별 배분은 법인 별 상이)	동일	동일	동일

사전 질의내용 답변, 계속

▶ 제3자 콜옵션 평가 시 할인율 관련 사항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내재옵션으로 평가시 무위험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는 감사법인의 의견이 많습니다. 제3자 콜옵션 즉, 별도파생 상품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무위험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사	B사	C사	D사
내재옵션: 무위험이자율 권고 제3자콜옵션: 혼합할인율 적용 권고	혼합할인율 권고 (무위험할인율도 인정)	내재옵션: 위험할인율 적용 권고 제3자콜옵션: 이연지정 관점으로 지분; 무위험, 부채; 위험, 행사가격; 위험할인율 적용 권고(혼합할인율도 인정)	한공회 책자 참고

▶ Put/Call Option(주식옵션)의 평가시 적용 등급

상기 제3자 콜옵션 평가시 할인율에 대한 질의 사항과 동일합니다. 주식 옵션 또한 무위험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한영회계법인 측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사	B사	C사	D사
Put; 위험할인율 Call; 무위험할인율 Call의 경우 구조 및 담보 등의 형태에 따라서 위험할인율 적용 case도 존재하므로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	동일	동일	동일

자본부채 분류

사전 질의내용 답변, 계속

▶ 영구 전환사채 평가 방법론

영구 전환사채는 시장에서 첫 콜옵션 일자에 해당 채권이 모두 상환됨이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발행되고, 실제 첫 콜옵션일자에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만기 연장 조건이 부여된 만기 30Y 채권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상 만기인 30Y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과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첫 콜 옵션일에 상환됨을 가정하고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한 회계기준 불합치 여부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사	B사	C사	D사
무조건 첫 콜 날짜를 만기로 가정하지 않음	동일	동일	동일

- ▶ 최근 기관투자자는 RCPS로 시리즈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가 관측되는 경우 거래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1) RCPS 같은 경우 발행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회계법인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2) 평가대상 회사에 유의적 변동으로 더 이상 거래가를 준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평가방법론(DCF, MA)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정이나 Back Solve를 이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사	B사	C사	D사
(1) 인정하지 않음 (2) Back Solve 방식 수용함	동일	동일	동일

사전 질의내용 답변, 계속

▶ 공정가치 기준

회계법인에서는 발행일거래가격 기준 공정가치와 이론가격기준 공정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사용하는지, 이론가치를 사용한다면 발행일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어떤식으로 반영하는지

▶ A: 앞의 설명에서 논의 한 것 처럼 각 요소들의 자본 부채 분류 기준에 따라서 상이함.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측정 된 가치 자체를 인식하며 발행일 거래가격하고의 차액은 부채가 아닌 요소에 고려됨. 상각 방식 등은 각 법인별, 감사 Client 별로 달라서 획일화 되어있지 않음.

▶ Day1의 상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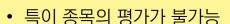
당사는 발행가격과 이론가격의 차이를 *전환가능시점까지 상각(정액상각) 시켜야 한다는 근거로 상장 CB의 경우 6개월, 비상장 CB의 경우 1년 동안을 상각기간으로 잡는데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 어떤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에 대한 근거 (*일반적으로 발행일 다음날부터 혹은 발행일로부터 1년후에 전환가능)

▶ A: 위의 질의 답변과 동일

SWOT

S

- 프로그램 기반의 평가 시스템
- 시장 변수 산출 기관
- 방대한 데이터 및 과거 정보를 저장하는 DB 보유
- 뛰어난 직원



- 일물이가 이슈
- 원활하지 않은 감사인 대응
- 회계 전문 지식의 부족



0

- 잘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평가 고도화 가능
- 기존 고객들을 기반으로 쉽게 영업적 접근이 가능
- DB 구축이 잘 되어있어 History Tracking이 쉬워 장기고객 관리에 유리
- 시장 정보 접근이 용이하므로 해당 장점을 활용 가능

- 평가시장에 많은 수의 로컬 회계법인이 진출
-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재무보고 목적 평가를 주 사업으로 하는 평가법인의 설립
-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독당국의 감독지침 업데이트

W

EY | Assurance | Tax | Strategy and Transactions |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EY Han Young is a client-serving member firm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operating in Korea.

© 2024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